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朴芝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.

발 의 자 : 朴芝源 · 박희승 · 윤준병
문대림 · 문금주 · 염태영
김의겸 · 문진석 · 이성운
김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표시판 설치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게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소비자는 충전요금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,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회원가입을 거쳐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6조의5제3항 신설 등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의5제1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”을 “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표시판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의 설치기준,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전요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이 법

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6조의5(충전요금의 표시)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.</u> <u><단서 신설></u>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제10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6조의5(충전요금의 표시) ① -----충전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-----. 다만,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표시판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의 설치기준,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08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9.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<u>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</u>
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